

실습시뮬레이션센터 위원회 운영규정

제정 2020.12.22

제1조 (목적)

이 규정은 해전대학교(이하 “본교”이라 한다) 실습시뮬레이션센터 운영을 위한 위원회를 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.

제2조 (기능)

시뮬레이션센터 사업추진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시뮬레이션센터 사업계획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
2. 시뮬레이션센터 사업 주요내용의 변경에 관한 사항
3. 사업비 예산에 관한 사항
4. 기타 사업 관련 중요사항

제3조 (구성)

① 위원회는 전문성을 가진 교내·외 7명 이내로 구성한다.

② 위원회 위원장은 실습시뮬레이션 센터장으로하며, 위원은 교육혁신처장, 기획조정처장, 행정지원처장, 간호학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교외위원은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또는 산업체 인사 등으로 한다.

제4조 (임기)

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, 연임할 수 있다.

② 위원이 궐위 된 경우 그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

제5조 (회의)

①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③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대학 내 행정조직 및 그 밖의 기관의 책임자를 위원회에 배석시킬 수 있다.

제6조 (간사)

위원회의 사무처리와 운영을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, 간사는 코디네이터로 한다.

제7조 (회의록의 작성)

위원회는 회의의 일시, 장소, 발언요지, 결정사항 등이 기록된 회의록을 작성·보존하여야

한다.

제8조 (경비 등 지원)

위원회에 참석하는 외부위원 또는 관계 전문가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.

제9조 (운영세칙)

이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할 수 있다.

부 칙(2020.12.22.)

제1조 (시행일)

이 규정은 2020년 12월 22일 부터 시행한다.